

국외학술교류대학과의 학생교류수학 및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

제정 : 2006. 6. 22.

개정 : 2015. 2. 06.

담당 : 교학팀(950-5406)

----- 목 차 -----

제1조(목적)	제2조(적용범위)	제3조(시행세칙)	제4조(지원대학)
제5조(지원자격)	제6조(수학신청)	제7조(수학허가)	제8조(등록 및 학기의 인정)
제9조(교과목의 이수)	제10조(수학신청의 취소)	제11조(취득학점)	제12조(수학기간)
제13조(학점인정 기준)	제14조(학점인정 절차)	제15조(단기어학연수 및 성적인정)	제16조(지원자격)
제17조(지원시기)	제18조(수학허가)	제19조(정원)	제20조(등록 및 수강료)
제21조(수강신청)	제22조(수학허가의 취소)	제23조(취득학점)	제24조(취득학점의 처리)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한국성서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교”라 한다)와 국외학술교류대학(이하 외국대학)과의 학생교류수학 및 학점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본 대학교와 국외학술교류대학과의 상호교환, 유학 등 교류 수학하는 학생에게 적용한다.

제3조(시행세칙)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제2장 본 대학교 학생의 국외학술교류대학 수학

제4조(지원대학) ① 지원대학은 본 대학교와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한 외국대학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지도

교수의 추천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이외의 외국대학에 지원할 수 있다.

② 지원대학은 해당국가의 정규인가를 취득하고 지명도가 있는 신용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 대학교육 전반에 걸쳐 정규대학의 수준이 인정된 학교에 한한다.

제5조(지원자격) 본 대학교 재학생으로서 외국대학에 수학하고자 하는 학생(이하 “지원자”라 한다)은 학칙에 의거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자로서 기 이수한 학기의 성적 평점평균이 3.0 이상인 자로 한다.

제6조(수학신청) ① 지원자는 전공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지원서류를 국제 교류팀에 제출한다.

1. 지원서
2. 지도교수추천서
3. 자기소개서
4. 전 학년 성적증명서(영문, 한글)
5. 여권사본

② 정규 학기 수학은 수학희망학기 3개월 전에, 계절 학기 수학은 개강 2개월 전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제7조(수학허가) 수학은 국제교류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허가한다.

제8조(등록 및 학기의 인정) ①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한 대학 중 학생교환협약에 따라 상호 수강료를 면제하기로 한 외국대학에 수학을 허가 받은 학생은 수학기간 동안 본 대학교에 소정의 등록금을 납입하고 등록하여야 하며, 그 외의 대학에 수학하는 경우는 당해 외국대학의 규정에 따른다. 단 계절 학기의 등록은 교류대학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휴학기간 중에 외국대학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에 학점은 인정할 수 있되, 등록 학기 수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.

③ 교류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본 대학교에서 수여하는 성적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으며 또한 조기졸업의 자격조건으로 반영되지 않는다.

제9조(교과목의 이수) 이수 교과목은 전공관련 교과목을 원칙으로 하되, 지도교수의 추천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이외의 교과목도 이수하게 할 수 있다.

제10조(수학신청의 취소) 수학신청의 취소를 원하는 학생은 수업 주수 4분의 1선 이내에 수학신청 취소원을 본 대학교에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제11조(취득학점) ① 학기당 취득학점은 학사과정은 18학점, 대학원과정은 과정별로 12학점 이내로 하며, 계절 학기는 6학점 이내로 한다.

② 수학기간 동안 취득학점은 계절 학기 학점을 포함하여 소속대학(원)의 학위취득에 필요한 최저 소요학점의 2분의 1 이내로 한다.

제12조(수학기간) 정규 학기의 수학기간은 1개 학기를 원칙으로 한다. 그러나 총장의 허가를 받아 1개 학기를 더 연장할 수 있다.

제13조(학점인정 기준) ①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은 취득한 성적 그대로 학적부에 등재하되, 평점평균 산출 시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.

② 이미 이수한 교과목과 동일한 교과목의 학점은 인정하지 아니한다.

③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예정 교과목과 전공관련 교과목 이외의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제14조가 정하는 학점인정 심의절차를 거쳐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. 단, 4학기제 운영체제에서는 2/3만 등재한다.

제14조(학점인정 절차) ① 수학이 허가된 자는 수학기간 종료 후 즉시 성적증명서와 이수기록 등 관련서류를 지도교수, 전공주임교수를 경유하여 교학처장(교무팀, 국제교류팀)에게 제출한다.

② 교학처장은 전공주임교수회의를 주재하여 심의한 후 학점인정여부를 결정한다.

③ 교학처장은 전항의 인정된 취득학점을 학적부에 “○○대학(교) 수학 이수학점”임을 표시하여 등재한다.

제15조(단기어학연수 및 성적인정) ① 단기어학연수는 본 대학교에서 학위과정을 1개 학기 이상을 이수한 자로 한다.

② 단기어학연수의 학점은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.

기 간	인 정 학 점	재학 중 허용횟수
1 ~ 2 개월	2 학점	2 회
3 ~ 6 개월	4 학점	2 회

단, 단기어학연수로 인정 받은 학점은 총 8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.

③ 단기어학연수가 허가된 자는 연수기간 종료 후 즉시 성적증명서와 이수기록 등 관련서류를 지도교수, 관련어학담당교수를 경유하여 교학처장(교무팀, 국제교류팀)에게 제출한다.

④ 교학처장은 지도교수, 관련어학담당교수와 의 연석회의를 주재하여 심의한 후 학점인정여부를 결정한다.

⑤ 교학처장은 전항의 인정된 취득학점을 학적부에 “○○대학(교) 수학 이수학점”임을 표시하여 등재한다.

제3장 국외학술교류대학 학생의 본 대학교 수학

제16조(지원자격) 본 대학교에 수학하고자 하는 교환학생의 지원 자격은 다음과 같다.

- ① 교류대학에 재적 중인 자로서 해당 학위과정을 1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자
- ② 기독교신앙인으로 세례를 받은 자 또는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는 자
- ③ 본 대학교 학칙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
- ④ 한국어시험을 통과하여 수학능력을 검정 받은 자

제17조(지원시기) 정규 학기 수학은 수학 희망 학기 3개월 전에, 계절 학기 수학은 개강 2개월 전에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제18조(수학허가) 지원자는 소정의 지원서류를 제출하고 서류심사와 구술고사 및 면접 등 심사절차를 거쳐

총장의 수학허가를 받아야 한다. 단, 부득이한 경우에는 심사절차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.

제19조(정원) 정규 학기 수학 학생의 정원은 당해 학부정원의 10분의 1 이내로 한다.

제20조(등록 및 수강료) 정규 학기 수학학생은 수학기간 동안 본 대학교에 소정의 수강료를 납입하고 등록하여야 한다. 다만, 본 대학교와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한 외국대학 중 학생교환 협약에 따라 상호 수강료를 면제하기로 한 경우에는 수강료는 납입하지 아니하나 소정의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.

제21조(수강신청) 수강신청, 변경 및 취소는 본 대학교가 정한 절차에 따른다.

제22조(수학허가의 취소) 수학허가를 받은 학생이 수학기간 중 본 대학교의 학칙을 위반한 때에는 수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

제23조(취득학점) 정규 학기의 학기당 취득학점은 학사과정은 18학점 이내로 하고 수학기간은 1개 학기를 원칙으로 하며, 계절 학기는 6학점 이내로 한다.

제24조(취득학점의 처리) ① 취득학점은 본 대학교의 학칙 및 학업성적처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.

② 전항의 취득학점에 대하여 성적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6년 06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02월 06일부터 시행한다.